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일자리 창출,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사기 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(안 제1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10월 1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“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”를 “오산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.
 1.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사업의 우선 지원
 2.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
 3.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) <u><신 설></u></p> <p>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3년</u>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6조(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)</p> <p>① <u>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